

독일판례 2

정정보도문의 적법한 범위 함부르크 고등법원 1984. 10. 25 판결 -3U 149/84 사건-

<적용법조>

함부르크주 언론법 제 11 조 제 2 항 제 2 문

<판결요지>

1. 정정보도문이 원문기사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 있어서만 적법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함부르크주 언론법 제 11 조 제 2 항 제 2 문의 규정은 상한선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정정보도문이 허용되는 범위는 개개의 사건에 따라서 정해져야 하며, 이를 정함에 있어서는 사소한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결국 원문기사에 포함된 사실상의 주장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고, 간략한 답변을 할 수 있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지면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 정정보도문의 적법한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사실개요>

당사자들은, 근본적으로 정정보도문이 허용되는 적법한 범위에 관하여 서로 다투고 있다. 지방법원에서 이미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던 피신청인의 법률적 주장은 역시 항소심인 당원에 있어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판결이유>

정정보도문은 그 전체적인 길이에 있어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적인 길이라는 것은 원문기사보다 지나치지 않게 넓은 범위를 말한다는 것은 옳다. 즉 원문기사보다 지나치지 않게 넓은 범위의 정정보도문은 불법한 것이 아닌 것이다. 당원은 확립된 판례로서, 정정보도문의 범위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소한 기준(즉 단순한 물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해 왔다. 오히려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제도의 근본목적과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정정보도문이 원문기사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만

정정보도문이 적법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는 함부르크주 언론법 제 11 조 제 2 항 제 2 문의 규정은 하등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위 규정은 특별한 제한이 없이 정정보도문의 범위의 적절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당원 NJW68,S.1337 판결 참조). 피해자는, 언론상의 보호 받아야 할 이익이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적절한 범위로 요약해서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공중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진술할 기회를 가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원문기사에 포함된 사실상의 주장에 대하여 알기 쉽고 요약된 진술을 할 수 있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공간(지면)이 필수적인가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Löffler, Presserecht, 3. Aufl., Bd. I Anm. 125zu §11LPG, Löffler-Richer, Handbuch des Presserechts 1978, s. 124; Seitz-Schmidt-Schö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in Presse, Film, Funk und Fernsehen 1980 Rdnr. 129 s.55 참조).

이 경우에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원문기사의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것도 적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위 Löffler 참조).

피해자가 원문기사에 포함된 모든 사실상의주장에 대하여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문기사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기자신의 입장을 서술함에 그치지 않고 원문기사의 내용을 특정하고, 또한 독자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개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그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주 당연한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는 단순히 원문기사의 내용을 부정함에 그쳐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사실을 진술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문기사에 짚막한 형식으로 기술된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그 원문기사보다는 더 많은 지면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당원 AfP82, 34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문기사는 광범위한 기사 중 2 개의 부분에서 신청인의 행동을 취급하고 있다. 위 신청인의 행동이라는 것은 Berlin Philharmony 악단과 그 지휘자인 Herbert von Karajan 과의 불화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위 기사에서 신청인 자신의 행동은 비판적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그리고 위 기사는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의 뉘앙스 및 인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신청인도 역시 기사내용의 최대의 정확성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청인은 그가 관련된 본건 사안에 관하여 독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좀더 알기 쉽게 밝힐 수 있기 위하여 사실의 배경을 설명하는 데에 좀더 주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정정보도문이 항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장황한 서사시」로는 되지 않는 것이다. 법원이 정정보도문을 심사함에 있어서, 어떤 점에 관하여는 다른 표현방법을 사용하였더라면 더욱 간략해질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법원의 임무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정정보도문이 문제된 사안에 관하여서만 작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적절한 용어에 의하여 기술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이 중요한 점인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것이다.

정정보도문이 원문기사에 포함된 개개의 부분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 이를 위하여 일정한 지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 기사에 나타난 사실상의 주장이 신청인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사가 복잡한 사실관계를 부적절하게 요약하여 일부만을 묘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이 그러한 것이다. 원문기사의 내용이 위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연적으로 정정보도문이 원문기사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결과로 될 것이다.